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50800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선고 2016구합5506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9.
판 결 선 고	2016. 12.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0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0

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어떤 세목의 조세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기 위하여는, ① 먼저 과세의 객체 즉,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확정하고, ② 그렇게 확정된 과세 대상인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금액·가액·용량·건수 등으로 표시하여 금액화·수량화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③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그 세목이 가지는 조세로서의 법적 성격 즉 과세대상에서 오는 본질적·유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본축적 정도, 소득분배의 정도, 재정수요의 크기,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정치적·사회적·재정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0

2) 그 결과 여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세목에 대한 적용세율에는 유형적 구분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도 특히 담세력의 크기와의 대응 관계에서 나타나는 구분이 이른바 비례세율(flat rate)과 누진세율(progressive rate)의 구분이다. 전자는 과세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하여지는 일정 비율의 세율을 가리키고, 후자는 금액 내지 가액의 증가에 대응하여 누진적으로 정하여지는 세율을 가리킨다. 통상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의 크기를 직접적 기준으로 하지 않는 조세에 관하여는 전자의 비례세율이 채용되는데 비하여,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의 크기를 직접적인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누진세율이 채용되는데, 누진세율에서도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그 전체에 대하여 단순하게 고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과 과세표준을 다수의 단계로 구분해서 높은 단계로 감에 따라 점차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이 있고, 이 초과누진세율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의 구분의 각 단계를 이른바 과세단계(bracket)라고 하고, 각 단계에 적용되는 세율을 단계세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초과누진세율이 담세력의 크기에 대응하는 조세부담의 요청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과세의 대상이 소득과 재산으로서 담세력의 크기를 직접적인 기준으로 해서 과세되는 소득세·상속세 등에 채용되고 있다.

3)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여서, 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1천 2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 구간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누고, 그 각 구간에 대하여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8에 이르기까지 점차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②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2억 원 이하에서 200억 원 초과의 3단계로 나누고 그 각 구간에 대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2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0

이르기까지 점차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1]에서 과세표준을 1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초과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누고 그에 대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에 이르기까지 점차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소득과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에서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의 크기에 대응하여 과세하고자 초과누진세율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서, 과세구간을 직접적으로 '과세표준의 구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담세력의 크기와의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한편, 지방세법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택에 관한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제111조 제1항 3호 나.의 규정이다. 여기서도 과세구간을 과세표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그 각 구간별로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에 이르기까지 점차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산세의 성격이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라는 점에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상속세 등과 마찬가지로 담세력의 크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과세를 위해 과세구간을 '과세표준의 구간'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5)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과세의 대상이 앞서 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과 다르고 재산세와도 다르다. 즉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

1) 이 조항은 상속세 세율에 관한 규정이나,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여 증여세에도 적용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0

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위의 각 조세와 구분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취득세는 담세력의 크기와의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위의 각 조세와는 달리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되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정하고 있는 세율이 단순한 비례세율로서 단지 취득 원인이 상속 등의 무상취득인지 여부와 취득대상 부동산이 농지인지 여부에 따라서만 달리 정해져 있는 것도 이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6)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보면, 우선 세율 구분의 기준을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고 하고 있지,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있지 않다. 앞서 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과 재산세의 경우 명백히 '과세표준의 구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그 입법연혁 등으로 볼 때, 농지 외 부동산의 유상거래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이라는 세율을 감경하면서 1000분의 10 내지 30으로 그 감경비율을 달리한 것으로서 취득세 부담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와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한 세율로 이해될 뿐, 담세력의 크기에 대응한 누진세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원고들은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도 과세표준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담세력의 크기와의 대응관계 면에서 조세로서의 성격을 달리하고 법문상으로도 과세구간 설정 기준을 명백히 달리하고 있는 앞서 본 소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0

세 등이나 재산세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고 하여, 모든 법률관계에서 별도의 근거 없이도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8) 결국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취득 대상이 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0조에 따른'이란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이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나 신고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의미로 풀이함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현

판사 왕정옥

판사 송혜정